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항만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해양수산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과 관련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「항만법」이 개정(법률 제19140호, 2022. 12. 27. 공포, 2023. 6. 28. 시행)됨에 따라 “한국항만협회”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, 인용 조문 오류 정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관리·운영 전담기관 지정(안 제34조 등)

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*의 구축·운영 전담기관으로 한국항만협회를 지정하고, 업무범위, 운영방법, 비용 지급 등은 협약을 체결하도록 함.

* 항만개발사업 및 항만시설의 관리·운영과 관련된 정보 관리 및 민원사무 처리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(항만지하시설물 정보시스템 + 항만건설사업 정보시스템)

나. 그 밖에 법령 운영 상 미비점 개선(안 제2조)

인용조문 오류 정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항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제2조제10호”를 “제2조제11호”로 한다.

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제1항 및 제2항”을 “제1항부터 제3항까지”로 한다.

-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”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
-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·운영방법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·사용 등에 관하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
제40조제3항 중 “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협회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) 「항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10호 및 제45조제2호에서 “일반업무시설·판매시설·주거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”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. 1. ~ 6. (생략)	제2조(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) ----- ----- 제2조제11호 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4조(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 ② (생략) <u><신 설></u>	제34조(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)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”이란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를 말한다. ② (현행과 같음)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협회에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범위·운영방법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범위·사용 등에 관하여 협회와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·운영에 관한 사항은	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----- ----- -----

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. 제40조(항만시설의 기술기준) ① · ② (생 략) ③ 법 제36조제4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”이란 <u>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항만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</u>를 말한다. ④ (생 략)	-----. 제40조(항만시설의 기술기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<u>협회</u>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---	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0 - 5920